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제359회 임시회 2017. 10. 16.(월)

#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수석전문위원정일하

### 충청북도 지방도상 이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시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박병진 의원 등 7인

####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7년 9월 29일

나. 회부일자 : 2017년 9월 29일

#### 3. 제안이유

지방도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야생동물 등의 충돌사고로부터 운전자와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로관리기관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신속하게 사체처리를 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도지사가 관할하는 도로로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 다. 충돌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사체처리 등 관리기관의 임무를 명확히 함(안 제4조)
- 라. 동물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야생동물 사체발견 최초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5. 검토내용

####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16년도 도내 야생동물 로드킬은 총 195건이 신고되었고, 217 마리가 사고를 당하였으며, 미신고 건수를 추정하면 연간 1,000 여건 이상으로 추정됨.
-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임국도, 국지도, 지방도 상에서 차량과 야생동물과의 충돌로 인해 사체가 노상에 방치되어 운전 자들의 혐오감 유발과 2차사고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임무를 정하는 것으로 생태통로 설치,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하드웨어적 예방대책과 정기순찰, 신속한 사체처리 등의 소프트웨어적 대책을 병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 지방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기관의 임무를 정하여 도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 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17. 9. 21.~'17. 9. 26.)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 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

####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 6. 검토의견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도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야생동물 등의 충돌사고로부터 운전자와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로관리기관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신속하게 사체처리를 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